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후 심의 절차 도입〉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4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후 심의 절차 도입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후 심의 절차 도입

현행 법령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보 노출이 지속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등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접근을 일시 제한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⑤·⑥ (생략)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④ (생략)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	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치의무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⑨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심의위원회에-----

현행	개정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 ----- ----- ----- ----- ----- ----- ----- ----- ----- -----. ----- ----- -----심의위원회에-----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⑤ -----

현행	개정안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검토의견

-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¹⁾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공개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나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이 있으면,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운영자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조치의무사업자’는 이를 인식하는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조치의무사업자는 특정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어 신고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²⁾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 의심 정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³⁾를 요청하도록 한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해당 정보의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접근을 임시 제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심의를 위한 전자심의(서면회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는 평균적으로 약 24시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동 개정안 제22조의5제7항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일정 범위(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 등)로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의심 정보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경우 임시조치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가 통보된 후에는 사업자가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삭제·차단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 기간 도중 발생 가능한 N차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에 대해 심의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유통방지 조치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게재자의 표현을 사적으로 검열⁴⁾하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⁵⁾에 따른 임시조치와 달리 책임 감면 규정(제6항)이 없

4) 특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정보게재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

어 당사자 이익의 손실 우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종합적으로 볼 때, 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 의심 정보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도 심의 결과 이전에 임시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삭제·차단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한 규정은 이행 기한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임시조치 조치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

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